[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1. 경영상태 심사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의 경영상태 심사는 주된 공사의 업종으로 심사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호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6)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경영상태 심사 평점 = 경영상태 점수 × 10/35
8) 신용평가등급은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하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평가등급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점수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4.7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4.2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3.1
CCC+이하	C0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32.1

2. 시공실적 심사

1) 시공실적 평가는 업종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의 확인금액을 적용한다.
2)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을 평가하며, [별표3-1]의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단, 실적제한 대상 공사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1) 다만,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시공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는 1.0을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6)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업종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8-1) 당해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8-2) 전문업종별 평점은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점이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8-3)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문업종별 평점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8-4) 전문건설사업자가 '21년 이후의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배점을 기준으로 8-1) 및 8-2)에 따라 평가한다.
9)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10)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1)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5	**평점 = [(A×2)/(365×3년)+B/(365×3년)] × (배점)** - A : 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해당 기술자 보유 여부만 평가(주3) 참고)
		품질	1	
		안전	1	**평점 = (배점)×C/(365×3년)** - C : 해당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계			8	

※ 주 :

1) 배치기술자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업종의 경력으로 평가한다. 발주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현장대리인의 참여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구 분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 제외) 기준 (인정규모)
	30억원 이상 공사

3) 심사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배치기술자 심사는 서류제출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배치기술자는 각 분야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분야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기술자 보유여부는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
   **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보유여부는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실적제한공사에만 적용하고 그 외 공사의 경우는 배점한도 적용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안전책임자 경력 평가가 곤란한 경우 배점한도 적용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평가 시 하도급으로 참여한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5)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7) 시공참여경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해당공사의 동일업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8)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8)" 및 "9)"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다)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이 경우 각 수요기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기술자 대체)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9)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 다만, 당초 심사 시 배점한도를 적용한 기술자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0)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11) 9) 및 10)에 따라 감점을 부여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계약신뢰도(감점) 심사 시 당해 발주공사에서의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감점한다.

12)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 사 요 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시공” 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 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4. 시공평가결과 심사

1) 시공평가 결과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다만,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3.7점)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4) 평가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6)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D등급(3.7점)을 적용한다.
7) 당해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

심사 항목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시공 평가 점수	A등급	95점이상	4.0
	B등급	95점미만 92점이상	3.9
	C등급	92점미만 89점이상	3.8
	D등급	89점미만 86점이상	3.7
	E등급	86점미만 83점이상	3.6
	F등급	83점미만 80점이상	3.5
	G등급	80점미만	3.4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2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삭제>
3)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등급 /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하
1등급	2	2	2	2	2	2	2
2등급	1.9	2	2	2	2	2	2
3등급	1.8	1.9	2	2	2	2	2
4등급	1.7	1.8	1.9	2	2	2	2
5등급	1.6	1.7	1.8	1.9	2	2	2
6등급	1.5	1.6	1.7	1.8	1.9	2	2
7등급	1.4	1.5	1.6	1.7	1.8	1.9	2

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주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이 아니거나 실적제한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규모별 시공역량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배점	참여비율 등급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4	A. 25%이상	4.000
		B. 20%이상, 25%미만	3.875
		C. 15%이상, 20%미만	3.750
		D. 10%이상, 15%미만	3.625
		E. 10%미만	3.500

※ 주 : [별표2] 8. 주1)~주4)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7. 안전관리 역량 심사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등급	점수
건설안전	2	사고사망만인율	평점 = 2.0(배점) − 2.0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2.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A. 1건	-0.4
			B. 2건	-0.8
			C. 3건	-1.2
			D. 4건	-1.6
			E. 5건 이상	-2.0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1.0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9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8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7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0.6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A. 2회 받은 자	-0.5
			B. 3회 이상 받은 자	-1.0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A. 사망자 1명	-1.0
			B. 사망자 2명	-2.0
			C. 사망자 3명 이상	-3.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A. KOSHA-MS	+1.0
			B. ISO 45001	+0.8

※ 주 :

1) [별표 2] 10. 주1) ~ 주12)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 공정거래 심사(가점)

<table>
<tr><th>심사
항목</th><th>배점</th><th>심사요소</th><th>배점</th><th colspan="3">점수</th></tr>
<tr><td rowspan="15">공정
거래</td><td rowspan="15">0.20</td><td rowspan="13">상호협력
평가</td><td rowspan="13">0.20</td><td>심사요소</td><td>평가 등급</td><td>점수</td></tr>
<tr><td>상호협력평가
등급</td><td>A. 95점 이상
B. 90점 이상 ~ 95점 미만
C. 80점 이상 ~ 90점 미만
D. 70점 이상 ~ 80점 미만
E. 60점 이상 ~ 70점 미만
F. 60점 미만</td><td>0.200
0.175
0.150
0.125
0.100
0</td></tr>
<tr><td rowspan="12">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td><td><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td><td>
+0.05
(-0.05)
+0.025
(-0.025)
+0.025
(-0.025)
0
(0)

+0.1
(-0.1)
+0.05
(-0.05)
+0.05
(-0.05)
+0.025
(-0.025)

+0.2
(-0.2)
+0.1
(-0.1)
+0.1
(-0.1)
+0.05
(-0.05)</td></tr>
<tr><td rowspan="2">공정거래
관련법
준수</td><td rowspan="2">-0.20</td><td>행위유형</td><td>조치정도</td><td>감점</td></tr>
<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td><td>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 미만
C. 과징금 10억 이상 ~ 30억 미만
D. 과징금 30억 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td><td>-0.03
-0.04
-0.05
-0.06
-0.07
-0.08</td></tr>
<tr><td>하도급법
위반행위</td><td>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td><td>-0.03
-0.05
-0.07</td></tr>
<tr><td>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td><td>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td><td>-0.02
-0.04
-0.05</td></tr>
<tr><td colspan="2">공정거래 평점</td><td colspan="5">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td></tr>
</table>

※ 주 :

1) [별표2] 11. 주1)~주5)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4-4)의 감점의 합은 −0.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는 기본점수(0.10점)을 적용하고,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점수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9.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2	고용 탄력성	0.2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20 0.16 0.12 0.08 0.04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1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00 -0.02 -0.04 -0.06 -0.08 -0.1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1) [별표2] 9. 주1)~주5)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고용 탄력성 점수는 기본점수(0.04점)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10.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2	평점 = 1.2(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1.2점)

※ 주 : [별표2] 12. 주1)~주6)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